

# 2024년 하반기 소방공무원(법무분야) 채용시험 공고

2024년 하반기 소방공무원(법무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소방청 장

## I. 채용예정인원 (시도 6명)

구분	계	대구	대전	충남	전북
법무	6	1	2	1	2

- 1) 최종합격자는 최초 임용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될 수 있다.
- 2) 시험일정 변경사항 등은 **소방청 및 119고시**(<http://119gosi.kr>) 누리집(이하 "119고시"라 한다)을 통하여 재공고합니다.

## II. 근거법령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 등

## III. 응시자격 요건

### 가. 공통요건

종류	응시자격 등 기준일
응시 결격사유 <sup>1)</sup>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2024. 12. 19.)
응시연령	2024년도 기준(다. 응시연령 참고)
응시자격요건(변호사 자격) <sup>2)</sup>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2024. 12. 19.)

1) 응시 결격사유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2) 모든 자격(면허)은 합격일이 아닌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 나. 응시 결격사유 등

- 1)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음의 관계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④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 2) 복수국적자 임용
  - 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② 「공무원임용령」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③ 「국적법」 제11조의2제2항(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복수국적자는 「국적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를 임용 전 또는 교육기관 입교 전까지 시험에 응시한 시도 소방본부에 제출하여야 함(복수국적자는 임용이 제한될 수 있음)

### 다. 응시연령

분야별	계급	연령	생년월일
법무분야	소방경	23세 이상 40세 이하	1983. 1. 1. ~ 2001. 12. 31.

- ▷ 다음의 관계법령에 따른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라 복무를 마친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의2에 따라 3세의 범위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 라. 신체조건

- 1) 신체조건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 2) 불합격기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 별표 7

마. 자격요건: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자격요건이 완성되어야 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자격보유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하면 응시 자격이 박탈됨

바. 주요업무 및 응시자격 요건

### 법무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법무	소방경	6

임용예정기관명
대구, 대전, 충남, 전북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 자문 및 소송 등 관련 업무</li> <li>○ 감찰조사, 징계 및 소청 등 관련 업무</li> <li>○ 소방활동 방해 및 법령 위반 사범 수사 등 업무</li> </ul>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li> <li>○ (직급별 역량)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li> <li>○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전략적 사고력, 논리적사고</li> </ul>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li> <li>○ 소송, 행정심판 등에 관한 법령 및 절차에 관한 지식</li> <li>○ 법률 및 행정규칙 제·개정을 위한 법제 일반지식 등</li> </ul>

응시자격요건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b>관련분야: 법무분야</b>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li> <li>-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li> <li>-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li> </ul>	
우대요건	○ 해당 사항 없음	

## IV. 시험일정

시험단계	시험절차	채용분야	시험공고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
------	------	------	------	------	--------

시험공고: '24. 11. 11.(월)

원서접수: '24. 11. 18.(월) ~ 11. 21.(목)

1차	서류전형	-	-	12. 6.(금)
2차	종합적성검사(공통) ※ 신체검사서 제출 6p 참고	12. 6.(금)	12. 13.(금)	-
3차	면접시험	-	12. 19.(목)	12. 27.(금)

1) 응시번호는 '24. 12. 4.(수) 10:00부터 119고시 마이페이지(원서제출내역)에서 확인 가능

2)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 예정

## V.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24. 11. 18.(월) 10:00 ~ 11. 21.(목) 18:00

나. (접수방법) 119고시 인터넷 접수만 가능(우편, 팩스, 전자우편은 불가능)

- 1)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주말·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접수 가능
- 2)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해야 함  
※ 119고시 접속 시간과 관계없이 원서접수 마감일 18시 이후부터는 접수 불가
- 3)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지 않으면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 포기 처리
- 4) 응시자는 원서접수 완료 후 정확한 접수가 되었는지 119고시에서 확인할 것(119고시 → 마이페이지 → 내 접수내역)
- 5) 원서접수 이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 초본 등 증빙서류 제출  
※ 시험절차마다 신분증, 응시표, 관련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소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면접시험일에 제출

다. (응시수수료) 소방경 7천 원

※ 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VI. 유의사항

-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 직무분야 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나.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불합격 처리)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라.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마.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바. 발행기관의 증명이 있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제출서류 중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사. 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시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 기한까지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응시포기로 간주합니다.
- 아.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서 포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기재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람이 최종합격자가 되는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 지정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합격 취소)

## VII. 시험절차 및 합격자 결정

### 1 1차 시험: 서류전형

- 가. 소극적 서류전형으로 시행
- 나. 응시자격요건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다.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24. 12. 6.(금) 14:00 / 119고시

- 증명서류는 서류전형 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 심사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시 불합격 처리함
- 서류 관련 특이사항 있는 경우 전화상담(☎ 044-205-7286) 후 서류구비 후 제출할 것을 권장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분야	공통 제출서류
법무	① 자기소개서 1부 ② 직무수행계획서 1부 ③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④ 사법연수원 수료증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1부

### 2 신체검사

※ 의료기관에서의 신체검사 결과 발급은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시험일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체검사 받기를 권고함

- 가. (검사방법) 소방청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는 인정하지 않음

- 나. (제출방법) **종합적성검사 당일(24.12.13.) 제출 또는 최종시험예정일(24.12.19.)까지 동기우편\*** 제출

\* 세종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625호 교육훈련담당관 원서접수 담당자 앞(우 30128)  
-동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까지 우체국에 정상 접수한 것까지 인정함(봉투 겉면에 찍힌 접수일 또는 동기번호 조회 시 접수일 기준), 민간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다. 신체검사 서류를 기한 내(24.12.19.) 제출하지 않거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시험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채용 시험에 불합격 처리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의 ‘판정보류’에 대한 별도의 재검사 기간을 두지 않으므로 수검 소요기간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 유의사항**

- ▶ 약물검사(TBPE) 결과를 포함하지 않은 신체검사서는 인정되지 않음
- ▶ 약물검사(TBPE) 시 금식은 필요하지 않으나 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된 약(감기약, 천식약 등)이나 카페인 과다 복용 시(녹차, 홍차, 피로 회복제 등) 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양성이 나올 수 있음. 이런 경우 재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검사 전 약물 및 카페인 섭취에 주의가 필요함  
※ 약물검사(TBPE)는 3~4일 소요되며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응시자는 추가검사를 받아야 함
- ▶ ‘색각’ 이상자는 신체검사를 받기 전에 종합병원에서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은 후 시험응시 가능 여부 확인 필요함
- ▶ 병원 사정에 따라 신체검사 후 검사서 발급 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 신체검사 관련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1년임(기준일: 최종시험예정일)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부착 사진은 검사를 시행한 의료기관의 압인 또는 계인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당의사 서명(인) 및 의료기관장 직인 날인이 되어 있을 것

라.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반명함판(3cm×4cm) 컬러사진 1~2매(병원마다 다름), 신체검사 수수료(병원마다 다름)를 준비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마. 콘택트렌즈나 색신교정렌즈 등 부정확한 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은 당해 시험에 불합격 처리됨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바. 신체검사 결과는 전산에 기록되어야 하며, 수기로 작성한 신체검사 결과서는 인정하지 않음. 특히 청력·혈압·시력은 반드시 수치로 작성되어야 함

사.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하며, 재검사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3 2차 종합적성검사**

가. 시험일자: '24. 12. 13.(금)

나. 시험공고: '24. 12. 6.(금) 14:00 / 119고시

다. 검사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종합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종합적성검사를 응시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 응시 불가

**4 3차 시험: 면접시험**

가. 시험일자: '24. 12. 19.(목)

나. 시험공고: '24. 12. 6.(금) 14:00 / 119고시

다. 면접위원: 2명 이상(외부위원 1/2 이상)

※ 면접 중 위원 회피(기피) 시에도 2명 이상 유지가 가능하도록 구성

라. 시험방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의 평정 요소

구분	평정요소 (5개 분야 50점)	S	A	B	C	D
발표면접	① 문제해결능력(10점)	10	8	6	4	2
	② 의사소통능력(10점)	10	8	6	4	2
인성면접	③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10점)	10	8	6	4	2
	④ 협업능력(10점)	10	8	6	4	2
	⑤ 침착성 및 책임감(10점)	10	8	6	4	2

마. (합격자 결정) 평정요소별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함.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시험위원의 평균점수가 25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
불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시험위원의 평균점수가 25점 미만(총점의 50% 미만)인 경우 불합격으로 결정 -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 5 합격자 결정

가. 최종합격자 공고: '24. 12. 27.(금) 14:00 / 119고시

나. 최종합격자 결정

-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면접점수 고득점자 순(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
- 2)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다. 추가 합격자 결정

- 1) 임용권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 임용권자는 최종합격자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VIII. 기타사항

가.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거나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고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나.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최종합격자 발표 후 10일 내)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됨

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 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할 수 있음

마.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근무기관에서 퇴직 또는 폐업 절차가 완료되어야 함

사.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임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바람

1) 시험일정: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044-205-7292)

2) 서류제출: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044-205-7286)

※ 문의전화: 09:00 ~ 18:00, <토요일, 공휴일,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